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412
------	------

제출일자 : 2023.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동체 생태계 확장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기본계획 수립 사항 추가(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다. 사업비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제11호 신설)
- 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10조의2 신설)
- 마.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14조제2항제5호 신설)
- 바. 마을공동체 위원 구성 직제순 개정(안 제15조제4항)
- 사. 마을공동체 위원 성별 균형 고려(안 제15조제5항)
- 아. 지원센터 설치 규정 개정(안 제22조제1항)
- 자. 지원센터 설치 규정 추가(안 제22조제2항 신설)

차. 지원센터 기능 추가(안 제23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2항1호나목 및 제28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10. 13. ~ 2023. 11. 2.)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만들기”를 “활성화”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만들기”를 “활성화”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만들기”를 각각 “활성화”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7.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연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제6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마을공동체”를 “공동체 생태계 확장”으로 한다.

11.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체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소책자·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홍보 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

동체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9.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p><u>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u>만들기</u>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마을공동체 <u>만들기</u>”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p>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u>만들기</u>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u>만들기</u>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③ (생략)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① (생략)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

- .
2. ----- 활성화-----
- .
3. ----- 활성화-----
- .
4. ----- 활성화-----
- .

제6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7.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연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

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 략)

제15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행정안전국장 등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⑥ (생 략)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5.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

⑤ -----

-----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원센터 설치) ① -----

----- 설치·운영 -----
-----.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등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 및 경비보조)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넘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행정안전국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2.8.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

다.

제1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촉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5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